

제31회 한국물류대상 후보자 추가 공모

제31회 물류의 날(23.11.1)을 기념하여 물류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와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배경

- 제31회 물류의 날을 맞아 물류산업 발전에 공헌한 물류·화주 기업 및 물류업계 종사자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

제31회 물류의 날 개요

- ◆ (時 · 所) '23. 11. 1.(수)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 (참석자) 장관님, 국회의원, 협회·단체장, 물류기업 관계자 등
- ◆ (주요행사) 한국물류대상(육상교통 진흥 유공) 수여식, 컨퍼런스 등

2 기본방향

- 물류업계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 및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자를 현장 중심으로 폭넓게 발굴하여 추천

포상 추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 현지실사, 평판 및 여론 확인 등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 강화

엄정한 포상절차 운영을 통해 한국물류대상의 영예성 제고

3 포상규모(안)

☞ **총 58명(예정)** ☞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규모 결정 예정

정 부 포 상					장관표창	총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소계		
1	2	4	6	13	45	58

4 추천대상

물류산업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물류 일자리 창출, 경영혁신, 해외진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물류 인프라 확충, 신기술 개발·보급, 인력양성, 학술연구, 물류 표준화 등 물류산업의 위상 제고에 기여
- 중소 물류기업 및 물류 새싹기업과 협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 물류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
- 배송체계 개선, 배송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
- 기타 국정과제 등 물류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 물류사업 분야, 제조·유통업 분야(일반제조 및 도매 유통업체 등 화주기업), 공공분야(물류관련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 학술분야 종사자

- ◆ 당해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 일반기준

- 상훈법령, 「정부 표창 규정」,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운영지원과)에 의함

□ 자격기준[추천일(23. 9. 13.)* 기준]

- * 포상추천일은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로 변경될 수 있음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 포장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장관표창의 경우 1년 이상)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포상 추천의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 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7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

- (검증대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장관표창 제외)
- (검증방법) 추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ON국민소통, 국민생각함,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
 - * 추천 후보자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6)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위의 내용은 공개됨(단, 외교·안보 등 비밀업무의 경우 공개에서 제외)
 - *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실명·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e-메일(mkjeong17@korea.kr) 또는 전화(☎044-201-3999)로 제출
- 공개결과의 활용
 -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 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이 접수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물류정책과(☎044-201-3999)에 즉시 통보
- 현장조사
 - 한국물류대상의 영예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통하여 포상 후보자의 적격여부 확인

8

제출서류

- ①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서식 1)

- ②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명단 및 공적요약 1부(서식 2)
- ③ 공적조서(개인용 또는 단체용) 1부(서식3)
 - *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포상업무담당(과장급 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성명 기재), 추천관은 추천기관장 직위, 성명 기재 후 **직인날인** 제출
- ④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또는 인사기록카드 사본(이력서) 1부(서식 4·5)
 - * (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에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 (일반국민) 인사기록카드는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제출
 -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담당관 확인 후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첨부
- 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6)
- ⑥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7)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⑧ 공적 증빙자료 1부
 - * 회사소개서, 사진, 동영상물, 신문스크랩, 연구실적, 봉사활동 등

9 행정사항

제출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3. 6. 30(금)
- 제출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 전화번호 : 044-201-3999(담당자 : 정미경 주무관)

- E-메일 : mkjeong17@korea.kr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아울러, 공적조서, 대상자 명단 및 공적요약서는 한글파일(.hwp)로 E-메일 별도(추가) 송부

※ 별도 송부하는 한글파일은 스캔 또는 pdf파일로 변환하지 말고 한글파일(.hwp)로 송부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E-메일 본문에 표기 요망

□ 포상수여 : 2023. 11. 1.(수)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대상자 발표 : '23. 10월 중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서식6, 서식7)가 필요함

○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중 선택하여 후보자를 추천(이중 추천 불가)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허위 기재 및 누락, 위조 및 변조는 추천 기관의 책임임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함

* 정부포상업무지침 : 행정안전부 상훈 홈페이지 참조(<http://sanghun.go.kr>)

포상대상자 추천관련 서식

- 서식 1.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민간인 · 재직공무원 · 단체)
2.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명단 및 공적요약
3. 공적조서(개인용, 단체용)
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만 작성)
5. 이력서(일반국민 중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작성)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작성시 참고사항》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 ② 상훈관리프로그램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수공기간은 공적기간 기산일로부터 공적서 제출일까지 기간을 연-월-일로 계산하여 기입
 -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⑦ 세금체납은 기재하지 말 것
※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에 일괄 조회 예정이므로 “-” 표기
 -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 위 ⑧~⑨ 작성시 조회·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2]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명단 및 공적요약

□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명단 (00명)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추천훈격 (재직기간)	비고
1	대우건설(주)	차 장	서○○ (徐○○) 65. 07. 01	정부포상 (25년3월)	시공 업체
2	한국공항공사	과 장	양○○ (梁○○) 69. 05. 09	장관표창 (15년5월)	비행장시설 준공·관리
3					
4					
5					
6					
7					
8					
9					
10					

□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공적요약(00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한자) 생년월일	수공 기간	추천 훈격	징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공적조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1	대우건설(주)	차장	서○○ (徐○○) 65.07.01	25년 3월	정부 포상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공 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 하고, 공사기간을 단축(○년 ○월) 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2					장관 표창	-	
							<주의사항> 1. 서식, 글자크기 등 변형 금지 2. 줄바꿈시 엔터키 대신, 반드시 스페이스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력	
년월일	이력사항
'97.01.01~'10.12.01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내용
'97.12.11	국토교통부장관표창
공적내용	
<p>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5페이지 내외 추천)</p> <p>○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공적사항"은 최대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기술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사진 등 기타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p>○ 학력, 경력, 공적 등 확인은 상훈법령에 따른 필요 절차를 감안하여 양해를 바람</p>	

공 적 내 용

주요 경력	
연월일	이 력 사 항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공 적 내 용	
반드시 2000자 이상(5페이지 미만) 작성	

공 적 내 용

[서식5]

※ 인사기록카드 사본이 없는 일반국민이 작성하고, 이력사항 증명서류 첨부 필요

사 진		이 력 서				(작성예시)	
		성 명	한 글	○ ○ ○	생 년 월 일	1970. 6.29 (만 세)	
			한 자	○ ○ ○	주민등록번호	- 미 기 재 -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00-111111호 (핸드폰번호)					
학 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진공(학위)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 위(급)	업 무 내 용			
	'98.03.05~'99.02.14	00 물류기업	대리	물류계약			
	'99.03.03~'01.07.14	00 물류기업	과장	협력기업 총괄			
상 훈	년 월 일	상훈 사항		시 행 처			
형 별	년 월 일	종 류		비 고			
<p>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p> <p>2023년 월 일</p> <p>성 명 : ○ ○ ○ (인)</p>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p>▪ 신고의무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명		추천훈격	국토교통부장관표창
소속(주소)		직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추천제한여부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성명

(서명)